



Tax Administration Services during *Force Majeure* period ^{P1}

Relaxation for Excise Tape settlement ^{P2}

Additional Incentives for Bonded Zone and KITE taxpayers in response to COVID-19 ^{P2}

Update on Limitation of Tax Court Services in response to COVID-19 ^{P3}

Force Majeure 기간 동안의 세무 행정 서비스 업데이트

재무부는 국가재난관리청장이 발표한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force majeure*” 기간(5 월 29 일까지이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동안 세무 행정 서비스 관련 기간제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PMK-29 를 발표하였으며, 동 PMK-29 는 2020 년 4 월 7 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세무당국이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을시에 회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특정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 *force majeure* 기간 동안에는 아래와 같이 동 기한이 연장됩니다:

기존 회신기한	<i>Force majeure</i> 기간 중 회신기한
최대 1일 이내 에서 7일 이내인 경우	최대 15일 이내
7일을 초과하고 1개월 이내일 경우	최대 1개월 이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없음 (기존 응답기한과 동일)

회신기한의 연장은 납세의무자가 2020 년 4 월 7 일 이후에 요청을 한 경우, 요청한 시점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4 월 7 일 이전에 요청을 한 경우에는 세무서가 4 월 7 일까지 회신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연장이 적용됩니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기존에 승인받은 사항에 대하여 만료기한이 *force majeure* 기간내에 속하여 연장 또는 재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는 경우, 기존의 승인이 *force majeure* 기간 내에 지속적으로 적용이 되며, *force majeure*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연장 또는 재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하기 사항에는 위에서 설명한 연장혜택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과세대상 재화의 수입과 관련하여 Article 22 수입원천징수세의 면제와 부가세 미징수 혜택을 받는 경우;
- 법률, 정부법령 또는 정부규정에서 기한을 정하고 있는 경우, *force majeure* 기간이 법률 등에서 정하는 기한을 위배하는 경우;
- 세무 행정 서비스가 전자적(electronically)으로 수행이 되어 완료할 수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Force majeure* 기간내에는 모든 신청서 및 추가적인 자료 등을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지(Excise Tape)세 납부 연장 혜택

재무부는 증지세 납부와 관련하여 연장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재무부 규정 No.30/PMK.04/2020 (PMK-30)을 발표하였으며, 동 규정은 2020년 4월 9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동 혜택이 COVID-19 팬더믹 기간동안 제조업자의 생산성 및 현금흐름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PMK-30은 제조업자가 2020년 4월 9일부터 7월 9일 사이에 증지를 주문한 경우에 증지대금의 납부를 90일 연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혜택은 기존에 2개월 증지세 납부 연장 혜택을 받은 제조업자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COVID-19에 따른 보세구역 및 KITE를 영위하는 납세의무자를 위한 혜택

재무부는 보세구역 및 수출 목적 제조에 대한 수입세 혜택(*Kemudahan Impor Tujuan Ekspor/KITE*)을 적용받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추가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재무부규정 No.31/PMK.04/2020 (PMK-31)을 2020년 4월 13일에 발표하였습니다.

PMK-31은 2020년 4월 13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주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세구역 혜택(Bonded Zone Facility)

보세구역 내의 납세의무자는 보세구역의 생산성을 유지하고 COVID-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세구역 내에서 사용되는 COVID-19을 관리하기 위한 소독약, 마스크, 개인 보호 장비, 열측정 장비 및 기타 장비의 이동에 대하여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외에서 생산된 재화에 대한 수입관세의 유예, 수입부가세(사치세포함) 및 수입원천징수세(Article 22)의 미징수;
2. 국내 일반과세지역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TLDDP*)에서 생산된 재화에 대한 부가세(사치세포함)의 미징수.

또한, TLDDP 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 동 판매량이 내국판매 쿼타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일반적으로 전년도 수출금액의 50% 한도).

KITE 혜택

KITE 회사는 수출목적으로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 수입세에 대한 혜택을 적용받으며, KITE Exemption, KITE Refund 및 KITE 중소기업(*KITE Industri Kecil Menengah/KITE IKM*)으로 구분됩니다. PMK-31 은 KITE 회사가 수행하는 거래의 유형에 따라서 혜택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1. 내국 구매에 대한 혜택(Facility for domestic purchases)

PMK-31 따르면 재화가 추가적인 가공 또는 KITE 회사의 제품과 결합되기 위하여 TLDDP 로부터 KITE Exemption 또는 KITE IKM 으로 이동되는 경우에 부가세 및 사치세는 미징수됩니다. 동 혜택은 KITE 회사의 생산품이 100%수출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KITE 회사는 부가세가 미징수 혜택을 적용받더라도 “부가세 미징수(VAT Not-Collected)”가 날인된 부가세 인보이스를 발행하여야 하며, 월합세금계산서(*Faktur Pajak Gabungan*)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KITE 회사는 수입한 재화를 가공, 조립 및 설치한 최종재화를 반드시 12 개월 이내에 수출하여야 합니다. 동 기간은 아래의 경우에 최대 12 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a. 매수자가 수출을 지연하는 경우;
- b. 매수자가 변동되거나 수출이 취소되는 경우;
- c. 전쟁, 자연재해 또는 화재와 같은 *force majeure* 상황인 경우.

또한, 수출실행 보고서의 제출기한(즉, 수출기한으로 부터 30 일 이내)도 상기에 해당되어 수출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미징수된 부가세 및 사치세는 KITE 회사가 최종재화를 수출하지 못하는 경우에 납부되어야 합니다. 부가세 과세표준은 수입한 재화의 수입가격이거나 최종재화가 TLDDP 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판매가격입니다. 납부하는 부가세 및 사치세는 납부하는 과세기간의 선납세금(credit)에 해당합니다.

2. 보세구역에 판매하는 재화에 대한 혜택

재화가 추가적인 가공 또는 보세구역 내의 제품과 결합되기 위하여 KITE Exemption 또는 KITE Refund 에서 보세구역으로 판매된 경우에는 이를 KITE 회사의 수출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에도 수입관세의 유예와 부가세 및 사치세의 미징수가 적용됩니다.

3. 재화가 KITE Exemption 에서 KIT IKM 으로 판매되는 경우

재화가 추가적인 가공 또는 KITE IKM 내의 제품과 결합되기 위하여 KITE Exemption 에서 KITE IKM 으로 판매된 경우에는 이를 수출로 간주하며, 따라서 수입관세의 유예와 부가세 및 사치세의 미징수가 적용됩니다.

4. 재화가 TLDDP 로 판매되는 경우

KITE Exemption 및 KITE IKM 은 전년도 수출금액의 50%을 한도로 내국판매에 대한 쿼타가 허용됩니다. 이 경우에 수입관세, 미징수된 부가세 및 사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내국 판매에 대한 부가세가 징수됩니다.

COVID-19 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KITE 회사는 생산되는 재화를 정부 또는 TLDDP 내에 적절한 회사에 납품을 할 수 있습니다. 동 판매는 내국 판매 쿼타에서 제외가 되며 수입관세 및 수입세에 대한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COVID-19 과 관련한 타 규정과 달리, PMK-31 은 상기에서 언급한 혜택에 대한 만료기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규정이 발표되면 별도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COVID-19 에 따른 조세법원 서비스 제한 관련 업데이트

조세법원은 COVID-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부응하고자 수 건의 Circular Letter 를 발행하여 확산방지 기간동안 조세법원 서비스를 중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텍스플래쉬 5 번([TaxFlash No.05/2020](#)), 6 번([TaxFlash No.06/2020](#)) 및 10 번([TaxFlash No.10/2020](#))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조세법원은 2020 년 4 월 16 일자로 Circular Letter No.-SE-05/PP/2020(SE-04)를 발표하여 서비스 중단기간을 2020 년 4 월 23 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동 기간은 정부의 추가적인 지침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한국데스크(KBD)로 연락부탁드립니다:

정태훈 회계사

E: taehun.jung@pwc.com

박인혁 회계사

E: inhyuk.park@pwc.com

박재성 회계사

E: jay.y.park@pwc.com

Your PwC Indonesia contacts:

Abdullah Azis
abdullah.azis@id.pwc.com

Gerardus Mahendra
gerardus.mahendra@id.pwc.com

Peter Hohtoulas
peter.hohtoulas@id.pwc.com

Adi Poernomo
adi.poernomo@id.pwc.com

Hasan Chandra
hasan.chandra@id.pwc.com

Raemon Utama
raemon.utama@id.pwc.com

Adi Pratikto
adi.pratikto@id.pwc.com

Hendra Lie
hendra.lie@id.pwc.com

Runi Tusita
runi.tusita@id.pwc.com

Alexander Lukito
alexander.lukito@id.pwc.com

Hisni Jesica
hisni.jesica@id.pwc.com

Ryosuke R Seto
ryosuke.r.seto@id.pwc.com

Ali Widodo
ali.widodo@id.pwc.com

Hyang Augustiana
hyang.augustiana@id.pwc.com

Ryuji Sugawara
ryuji.sugawara@id.pwc.com

Amit Sharma
amit.xz.sharma@id.pwc.com

Kianwei Chong
kianwei.chong@id.pwc.com

Soeryo Adjie
soeryo.adjie@id.pwc.com

Andrias Hendrik
andrias.hendrik@id.pwc.com

Laksmi Djuwita
laksmi.djuwita@id.pwc.com

Sujadi Lee
sujadi.lee@id.pwc.com

Anton Manik
anton.a.manik@id.pwc.com

Lukman Budiman
lukman.budiman@id.pwc.com

Sutrisno Ali
sutrisno.ali@id.pwc.com

Antonius Sanyojaya
antonius.sanyojaya@id.pwc.com

Mardianto
mardianto.mardianto@id.pwc.com

Suyanti Halim
suyanti.halim@id.pwc.com

Ay Tjhing Phan
ay.tjhing.phan@id.pwc.com

Margie Margaret
margie.margaret@id.pwc.com

Tim Watson
tim.robert.watson@id.pwc.com

Brian Arnold
brian.arnold@id.pwc.com

Mohamad Hendriana
mohamad.hendriana@id.pwc.com

Tjen She Siung
tjen.she.siung@id.pwc.com

Dexter Pagayonan
dexter.pagayonan@id.pwc.com

Oki Octabiyanto
oki.octabiyanto@id.pwc.com

Turino Suyatman
turino.suyatman@id.pwc.com

Engeline Siagian
engeline.siagian@id.pwc.com

Omar Abdulkadir
omar.abdulkadir@id.pwc.com

Yessy Anggraini
yessy.anggraini@id.pwc.com

Enna Budiman
enna.budiman@id.pwc.com

Otto Sumaryoto
otto.sumaryoto@id.pwc.com

Yuliana Kurniadjaja
yuliana.kurniadjaja@id.pwc.com

Gadis Nurhidayah
gadis.nurhidayah@id.pwc.com

Parluhutan Simbolon
parluhutan.simbolon@id.pwc.com

Yunita Wahadaniah
yunita.wahadaniah@id.pwc.com

www.pwc.com/id



PwC Indonesia

@PwC_Indonesia

If you would like to be removed from this mailing list, please reply and write UNSUBSCRIBE in the subject line, or send an email to contact.us@id.pwc.com.

DISCLAIMER: This cont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

© 2020 PT Prima Wahana Caraka.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Indonesian member firm, and may sometimes refer to the PwC network. Each member firm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